

#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본교의 입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.

1. 입학전형 유형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
3.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입학담당직원으로 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4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관리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(임기)

- ①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자문위원회) 삭제

제7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제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- ③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